제27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궤도사업 재허가 방법 및 절차(신설) ○ 궤도사업의 재허가 신청 시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규정 – (신청기간) 사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신청 – (신청서류) 사업계획서,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운영 실적 보고서, 부지 또는 용지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등 2.궤도시설 안전관리(강화) ○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, 계획의 보고 및 시행 미흡에 대한 보완·시정조치의 절차 등 규정 – (수립기준) 안전관리목표, 부품관리계획, 종사자 인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및 비상시 조치매뉴얼 등 – (계획제출) 궤도사업자등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변경·보완한 경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– (시정명령) 이행 여부 확인 결과 안전관리 불이행 등으로 궤도시설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시정조치 명령	규제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· 궤도사업자등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치계획 제출 및 조치 완료 시 지체없이 시정 내용 보고 – (부상자 정의)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부상자의 범위를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 규정	
2	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산업통상부)	1.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안전기준(신설) ○ (적용대상)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* 포함 * 직경 31.7㎜ 이하 리튬 및 비리튬계 전지(산업용 제외) ○ (포장방법) 16~31.7㎜ 범위 전지는 이중포장 형태 적용 ○ (표시사항) 직경 31.7㎜ 이하 전지 포장에 안전그림 및 경고문구 표시 ○ (안전요건 확인) ▲이중포장 점검 ▲표시사항 적용 여부 확인 ▲일정시간 내 손으로 개봉이 어려운지에 대한 시험 실시 등 수행 필요	규제 심사 완료
3	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(산업통상부)	1.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안전기준(신설) ○ (적용대상)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* 포함 * 직경 31.7㎜ 이하 리튬 및 비리튬계 전지(산업용 제외) ○ (포장방법) 16~31.7㎜ 범위 전지는 이중포장 형태 적용	규제 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(표시사항) 직경 31.7㎜ 이하 전지 포장에 안전그림 및 경고문구 표시 ○ (안전요건 확인) ▲이중포장 점검 ▲표시사항 적용 여부 확인 ▲일정시간 내 손으로 개봉이 어려운지에 대한 시험 실시 등 수행 필요	
4	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사항 추가(강화) ○ 기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소관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·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추가* * 기존신고내역 : ▲임대차 기간 ▲임대료 ▲대출금액(매입임대 한정) ▲ 임차인 현황(준주택 한정)	규제심사완료
5	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조치명령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(신설) ○ 충전시설 운영자에게 충전시설 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 이행* 및 결과 보고 의무 부과 * 즉시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조치명령 받은 날부터 3일 내 조치계획 수립 및 계획 보고	규제심사완료
6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(신설) ○ (설치정보) 충전시설 설치·운영자에게 설치정보*를 운영개시일 10일 이내에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정보 변경 시 그 내용을 5일 이내 입력하도록 의무부과 * ▲ 설치·운영자의 성명·연락처 ▲ 충전시설의 상세 위치·사진 ▲ 설치·운영 개시일 등	규제심사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(이용정보) 충전시설 운영자에게 이용정보*를 운영 개시일 10일 이내에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정보 변경 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입력하도록 의무부과 * ▲운영자의 성명·연락처 ▲충전시설의 운영일·운영시간 ▲비상시 연락번호 등 2.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(신설) ○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관리기준 마련 – (공통기준) ▲ 원격 모니터링·비상연락체계 유지 ▲ 민원대응 체계 24시간 운영 등 – (개별기준)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별로 상이하게 규정 · (전기자동차 충전시설) ▲ 운영상태 확인을 위한 정보 기록 및 보관 ▲ 반기 1회 이상 자체점검 및 예방 정비 실시 등 · (수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) ▲ 고장 다발 설비에 대한 예비부품 확보 ▲ 인력·교육·관리 체계 유지 등	
7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교육부)	1.유아 대상 예외적 허용 진단행위의 기준 및 절차(신설) ○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」상 금지되는 모집·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·평가 구체화 – (금지대상) ▲ 필기·구술·실기·면접 등 방식의 평가 ▲ 그 외 특정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·평가 등	본심사 상정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– (예외적 허용 진단행위 방법 등) 보호자에게 진단행위 결과 등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서면·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 · 진단행위는 교습행위 과정 중 실시하고 결과는 서술형으로 작성하되 점수·순위 등 표시 금지	